

울산광역시 중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

[시행 2026.04.23]

(일부개정) 2026.04.23 조례 제1465호 지역보건법 제11조,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

관리책임부서명 : 건강관리과
관리책임전화번호 : 052-290-4345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예방접종 지원 및 종류)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<개정 2026. 4. 23.>

1. 인플루엔자
 2. 대상포진
 3. 백일해
 4.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, 지원대상 질병에서 제외한다.

제3조(예방접종 지원대상)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<개정 2026. 4. 23.>

1. 인플루엔자: 접종일 현재 울산광역시 중구(이하 "구"라고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

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

다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

라. 18세 청소년

2. 대상포진: 신청일 현재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대상포진 접종이력이 없는 사람

3. 백일해: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

나.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 내 접종하지 않은 분만 1개월 이내인 산모 및 배우자

4.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

2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

제4조(예방접종 지원 횟수) 제2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지원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26. 4. 23.>

1. 인플루엔자: 연 1회

2. 대상포진: 최초 1회

3. 백일해

가. 임신부: 매 임신 시마다 1회 지원

나. 배우자: 최근 10년 이내 백일해 예방접종력이 없는 경우 1회 지원

4.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에 대한 표준 접종 횟수

제5조(예방접종의 실시) ① 예방접종은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.

② 구청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③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 및 「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」을 따른다.

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.

제6조(예방접종 지원절차) 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.

②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,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해야 한다.

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,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.

제7조(환수조치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.

1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

2.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.

제8조(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)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「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을 따른다.

제9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질병관리청 「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」에 따른다.

부 칙<2025. 11. 3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료기관과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<2026. 4. 23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